

국내 소식

○ 북한산 쌀 국내에 처음으로 반입

지난 3월 2일, 북한산 쌀 8t이 인천항을 통해서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물론 북한 물품의 우리나라 반입을 결정하는 통일부의 승인과 쌀과 같은 농산물 등의 관련 부처인 농림부의 동의를 거쳤다. 특히 농림부의 경우에는 이번 북한산 쌀 반입을 계기로 이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만들기도 했다. 국내 양곡 유통 시장 혼란 방지와 물량 제한 등의 내용이 주로 담겨져 있다.

이번에 들여온 쌀은 대부분 북한의 평안남도와 평양 등에서 남과 북이 공동 생산한 쌀로, 북한이 우리의 농업기술 및 비료 지원에 대한 일종의 ‘답례품’ 성격으로 관련 대북지원 사업단체들에게 제공해 준 것이다.

먼저 한민족복지재단이 들여오는 5t은 우리가 기술지원하여 생산할 쌀로 평안남도 숙천군의 약전농장에서 재배되었다. 나머지 3t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앞으로 온 쌀로 각각 평양 강남군 단곡리와 장교리의 남측 지원 사업장에서 수확된 것이다.

이렇게 들여온 북한산 쌀은 2kg 단위로 소포장하여 쌀 생산지역 출신 실향민과 관련 단체 관계자·및 후원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실향민들에게는 고향 쌀 밥맛을 보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남북농업교류사업의 성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줄 예정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상업적 판매나 유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제 앞으로는 실향민들도 고향에서 재배된 쌀을 먹을 수 있음은 물론 제사도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남북농업교류사업 역시 보다 활발해질 수 있을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본격적인 황사, 건강은 물론 가축·농작물 조심도

해마다 봄이 되면 중국의 내륙지방에서 오는 황사가 큰 문제인데 이제는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오염물질까지 더해져 우리 건강은 물론 여러 농작물에게까지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황사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에는 기관지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과 같은 호흡기 질환 외에도 결막염이나 피부질환의 악화 등이 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물품이 바로 황사마스크인데 주로 필터

기능이 좋은 제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황사로 인한 질병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기들은 황사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황사를 피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때문에 불가피
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귀가 후 관리
를 철저히 하여 집안에 먼지가 퍼지는 것
을 막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황사 피해
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황사로 인한 피해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가축이나 농작물 등도 황사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올바른 대비가 시
급하다.



〈 농촌지역 황사 피해 대책 〉

구분	사전 대책	사후 대책
농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 유입 차단 · 노지재배 농작물을 비닐 등으로 피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 온실등 농업시설 물위에 쌓인 황사는 물로 세척 · 노지에 재배된 농작물에 묻은 황사는 즉시 세척
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목장 등 외부에 있는 가축은 황사가 묻지 않도록 축사안으로 신속히 대피 · 축사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 유입을 막고 외부 공기의 가능한 차단 · 노지에 방치되어 있거나 악적된 사료용 건초 등은 황사가 묻지 않도록 피복 · 소독약품을 준비하고 방제기 및 황사를 세척할 수 있는 장비를 사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사의 주변과 내외부 가축 먹 이통, 가죽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을 씻어내고 소독실시 · 가죽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의 황사를 제거한 후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가죽 소독
농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농기계는 비닐 등으로 덮어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에 묻은 황사는 즉시 세척

○ 경찰, ‘정부 비판’ 집회는 모두 금지

경찰이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서 개최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 및 가두행진에 대해 줄줄이 금지 통보를 하여 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여수 공대위)가 신고한 오는 25일 집회 행진 신고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도심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금지를 통보했다.

“해당 행진 구간이 소위 ‘주요 도로’에 해당돼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빌생시킨다”며 집시법 제12조 2항을 들어 경찰은 ‘금지 통보’를 한 것인데 이에 여수 공대위는 “정부는 여수참사 희생자들의 영령과 유족들, 그리고 고통 받는 이주노동자들과 그들의 인권향상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을 생각인가”라며 “도심 주요 도로를 아홉 영령을 추모하고 정부의 억압 정책에 항의하는 데 잠시 이용하면 왜 안되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여기에 앞서 오는 3월 17일로 예정돼 있는 파병반대국민행동(국민행동)의 ‘이라크 침공 4년 규탄 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도 같은 이유로 금지했다. 국민행동은 “이번에 신고한 집회는 지난해 3월 19일과 9월 23일, 그리고 2005년 9월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반전집회와 똑같은 장소, 똑같은 행진 코스였다”며 “경찰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집시법을 이용해 정치적인 판단으로 집회를 막아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이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한다면, 서울 시내에만도 16개나 되는 주요 도로가 있어서 사실상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교통 소통 문제 때문이라면, 집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경찰이 교통 흐름을 안내를 잘 해야 할 일”이라고 경찰의 작의적인 법 해석과 직무 유기를 비난했다.

또한 국민행동은 “이번 집회의 불허 결정에 대해 우리는 한국 경찰의 비민주적인 작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규탄의 메시지와 항의 행동을 조직하겠다”고 밝혀 경찰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앞으로의 다른 집회에 대해서 경찰이 계속해서 집회 불허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